

##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 부과징수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3. 10. 29.  
사회·도시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달서구청장
- 나. 제출일자 : 93. 10. 7
- 다. 회부일자 : 93. 10. 11
- 라. 상정일자 : 93. 10. 29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# 가. 제안배경

- 대구직할시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는 90. 1. 13 법률 제4217호로 공중위생법 제27조, 제43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기준 및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되고
- 90. 4. 14 동법 시행령과 90. 12. 27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세부기준이 마련되었으며
- 93. 1. 26 보건사회부 지시에 따라 93. 6. 12 대구직할시 과태료 부과기준의 준칙시달로 달서구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과태료의 처분대상자는 공중이용시설 및 흡연구역 지정 시설에의 주된 소유자 점유자로 하며

- 과태료 부과시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며
-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행위별 최고 50만원이하로 함.
- 과태료는 달서구 수입으로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는 국고로 귀속함.
- 현재까지 공중이용 시설등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홍보차원에서 관리해 왔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실효성 제고는 물론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임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본 조례 제정 근거는 공중위생법 제27조, 제43조,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(안) 내용은 제11조 부칙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음.

지금까지 공중이용시설등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홍보차원에서 관리해 왔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실효성 제고는 물론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본조례(안)을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좋다고 생각함.

### 4. 질의 답변 요지

- 질의요지 : 93.1.26 보건사회부 지시에 따라 93.6.12 대구직할시 과태료 부과 기준의 준칙시달에 의거 구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준칙시달후 지금까지 5개월여동안 조례안 제출이 늦어지게 됨으로 과태료에 대한 구 수입이 줄었으므로 그동안 지체된 사유는?
- 답변요지 : 본 조례는 시의 지침에 의해서 94.1.1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음에 따라서 부칙 조항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잘못되었음.  
부칙을 "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"로 정정해야 됨.

5. 토론 요지 : 없음.

### 6. 수정안 요지

가. 제 안 자 : 김정해의원 외 5인

나. 수정 주요골자 : 부칙 "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"를 "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"

다. 수정 이유 :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조례(안)중 부칙안이 잘못되었음.

7. 심사결과 : 수정안

- 소수의견요지 : 지방자치제는 당해 자치단체의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게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나 상급기관의 준칙으로 시전역에 동일한 시점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앞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.